

쌍아들 곳도, 수출할 곳도 없어 코로나가 부른 '재활용쓰레기 대란'

동남아 수출 막혀 광주·전남 야적장 증고의류·플라스틱 등 '수북'
광주 올해 2만1010t 배출...포화상태에 수거·반입 거부 우려도
업체들 민원에 울며겨자먹기 수거 속 판매단가마저 급락 '아우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전남지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 단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일부 의류 쓰레기의 경우 동남아 수출까지 막혀 업체들은 "쌍아놓을 데도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쓰레기를 보관할 공간이 여의치않은 중소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반입을 거부하기도 하면 '쓰레기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쓰레기를 공공비축하겠다고 나섰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5일 광주시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2만 101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981t)보다 10.7% 늘어났다.

배출량도 2421t(1월) → 2467t(2월) → 2875t(4월) → 2913t(6월) → 3029t(7월)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민간 수거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쌍아놓을 곳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별로 야적장마다 가득 쌓여있는 "장기화되면 수거하기 버거워질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이날 찾은 광주시 북구 월출동 재활용 수거업체 야적장은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업체측은 아파트 3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찬 야적장이 부족, 옆 주차장에도 쓰레기를 쌓아놓았다.

수거업체측은 "더 이상 쌍아놓을 공간이 없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온갖 민원이 들어와 수거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 전남지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배달이나 포장 주문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꼽히지만 수출이 막힌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내 폐트병의 60~70%를 사들여 재활용하는 유럽과 미국 자원순환용 공장이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어려워졌고 유가 폭락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요도 급감했다는 것이다.

재생원료로 많이 쓰이는 생수병, 과일 트레이 등을 대표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단가는 지난달 kg당 597원(지난해 평균 850원), 일회용봉투 재질인 폴리에틸렌(PE)은 kg당 831원('974원), 도시락 용기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는 kg당 691원('751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최고 30%까지 떨어졌다.

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팔 수도 없고 그나마 수요도 급감해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을 자체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판매 단가가 떨어지다보니 손해를 보며 수거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중고의류 물량도 폭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고의류 수출 업체들의 경우 평소 수거 의류의 90% 이상을 수출했지만 코로나로 판로가 대부분 막혔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의류수거함에서 거둬들인 폐의류를 선별한 뒤 아프리카·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수출해 수익을 얻었던 업체들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고의류 단가도 지난해 kg당 350원 수준에서 올해는 100원 수준에 머무르는 등 폭락했다.

영양·해남·나주·무안·함평과 광주지역에서 중고의류를 수거, 판매하는 업체 관



15일 광주시 북구 한 재활용 수거업체의 야적장에는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발 디딜틈이 없다.



15일 장성군 산적리의 중고의류 수거업체 직원이 야적장에 쌓인 중고의류를 쳐다보고 있다.

계지는 "지난해에는 매일 수출업체에 의류를 공급했는데 올해는 일주일도 한번 팔아 버리는 게 더 많다"고 말했다.

다른 의류 수거업체 대표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출 물량이 급감, 수입의 80%가 줄었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품목별로 플라스틱 재질을 단일

화해 분리·배출 및 수거를 쉽게 해 재활용 쓰레기 순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번 쓰고 폐기하는 방식이 아닌, 다소 불편하더라도 회수하고 세척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갈 때"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학생 영당이 특특...교사 항소심도 유죄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들 영당을 건드리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계단을 오르고 있던 여학생 영당을 나무 막대기(장구채)로 건드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구채로 피해자의 영당이 부위를 톡톡 건드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벌금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 내규 들어 특하면 비공개 처분 '제동'

법원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 불과...공개 거부 근거 안돼"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오던 검찰보존 사무규칙과 관련, 법원이 또다시 '효력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사건 기록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피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행정 2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의 내규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A씨의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고소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을 냈다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이 '불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이 사건기록 공개 거부의 근거로 삼는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은 법무부령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수사방법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해당 규칙이 열람·등사를 제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A씨가 공개를 요구한 내용의 경우 검찰 주장과 달리, 정보공개법(9조 1항 4, 6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 뿐 아니라 법원은 검찰사무규칙을 통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도 지난 4월 H보험사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H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으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기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례를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기계적인 적용에만 얽매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소송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등이 현장 의견을 수렴, 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입후보 예정자 광고 무료 게재 주간지 발행인 벌금 200만원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주간지 발행인 A(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자 자신이 발행인인 A(56)씨는 광산구 지역 주간지에 4·15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 경력, 출판기념회 장소 등이 적힌 광고를 신문 맨 뒷면에 전면광고 형태로 게재하고 3000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감시간이 임박했는데도 광고가 마땅치 않아 무심코 게재한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실수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목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는 광고 배부 행위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문 맨 뒷면 전면광고로 쓸 법한 유료 광고를 안쪽 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무료로 출판기념회 광고를 맨 뒷면에 넣는다면, 10년 넘게 지역 주간지에서 일하며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고 정당인 경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광고 게재·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광고"의 경우 매체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력, 언론매체와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홍보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